

---

# 『미국, 첨단 청정 드력 풀링제도 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

2025. 07.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4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4,535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 목 차 ]

1. 규제 개요 .....	1
2. 개정 세부내용 .....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	9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5.6.25.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침단 청정 트럭(ACT) 규정 및 무공해 파워트레인 인증 시험절차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함
- (규제요지) 침단 청정 트럭(ACT) 규정을 채택한 주의 초과 무공해차량(ZEV) 크레딧 및 NZEV(준무공해차량) 크레딧 풀링제도 규정을 일부 개정함

TBT 통보번호	■ USA/2218	통보일	■ 2025.06.25.
		고시일	■ -
규제명	■ 침단 청정 트럭 풀링제도 개정안 ■ Advanced Clean Trucks Pooling Amendments		
규제부처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요구사항 유형	■ 환경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제·개정 상태	■ 개정 초안		
채택일	■ -		
의견수렴 마감일	■ 2025.07.14.		
발효일	■ -		
준수기한	■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 트럭 배출가스,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운송 배기 가스(ICS code(s): 13.040.50), 도로 수송 시스템(ICS code(s): 43.040)		
	■ Truck emissions; Environmental protection (ICS code(s): 13.020); Transport exhaust emissions (ICS code(s): 13.040.50); Road vehicle systems (ICS code(s): 43.040)		
적용범위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기 위해 차량 총중량 8,500파운드 이상의 도로용 차량을 인증하는 모든 제조업체		
■ 4,535	HS Code	■ 8704	

첨단 청정 트럭(ACT)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1956.8, 1963, 1963.1, 1963.2, 1963.3, 1963.4조를 일부 수정하고, 신규 조항 1963.7을 채택함
- 1963, 1963.1, 1963.2, 1963.3, 1963.4, 1963.5 및 1963.6의 목적은 도로용 무공해 차량 시장을 가속화하고 중형 및 대형 도로용 차량에서 질소산화물(NOx), 미세 먼지(PM), 기타 기준 오염 물질, 독성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는 데 있음

1963. 첨단 청정 트럭의 목적, 적용 가능성, 정의 및 일반 요건 개정 주요 내용

- 첨단 청정 트럭 규정에 풀링 제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정의 및 임의 크레딧 생성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함

[표 1] 목적, 적용 가능성, 정의 및 일반 요건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신설>	“첨단 청정 트럭(ACT) 풀링 주”란,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청정대기법(Federal Clean Air Act) 제177조(42 U.S.C. §7507)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13편 1963, 1963.1, 1963.2, 1963.3, 1963.4, 1963.5조의 요건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 중인 177조 주를 의미함
(c) 정의	<p>“제조업체”란 도로용 자동차를 신규로 조립하는 자, 또는 이러한 차량을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또는 신규 자동차의 유통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를 대리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상업적으로 취득한 신규 자동차에 관하여는 판매점을 포함하지 않음</p> <p>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용 차량 또는 기타 미완성 도로용 차량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도로용 자동차를 상업에 도입하는 자를 <b>기록된 제조업체로서</b> 포함함</p> <p>제조업체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용 차량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및 글라이더 차량을 조립하는 자가 포함됨</p> <p>제조업체에는 수입업체 또는 <b>기록상</b> 차량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 또는 2차 차량 제조업체는 포함되지 않음</p>	<p>“제조업체”란 도로용 자동차를 신규로 조립하는 자, 또는 이러한 차량을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또는 신규 자동차의 유통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를 대리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상업적으로 취득한 신규 자동차에 관하여는 판매점을 포함하지 않음</p> <p>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용 차량 또는 기타 미완성 도로용 차량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도로용 자동차를 상업에 도입하는 자를 포함함</p> <p>제조업체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용 차량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및 글라이더 차량을 조립하는 자가 포함됨</p> <p>제조업체에는 수입업체 또는 차량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 또는 2차 차량 제조업체는 포함되지 않음</p>

(f) 임의적 크레딧 생성	<p><b>면제 대상</b> 제조업체는 1963.2조 규정에 따라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생성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가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생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는 1963.2조에 따른 크레딧의 생성, 적립, 거래 규정, 1963.4조에 따른 신고 및 기록 보관 요건 및 1963.5조에 따른 집행 규정을 준수해야 함</p>	<p>1963조에 규정된 소량 생산 면제 대상 제조업체는 1963.2조 규정에 따라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생성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가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생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는 1963.2조에 따른 크레딧의 생성, 적립, 거래 및 인증 규정, 1963.4조에 따른 신고 및 기록 보관 요건 및 1963.5조에 따른 집행 규정을 준수해야 함</p>
----------------------	--	---

## □ 1963.1. 첨단 청정 트럭 부족분

- 첨단 청정 트럭 부족분의 발생, 계산, 반올림, 회계에 관한 규정을 다루며, 주요 내용 개정사항 없음

## □ 1963.2. 첨단 청정 트럭의 크레딧 생성, 적립, 거래 및 인증

- 첨단 청정 트럭 크레딧의 풀링 제도 개정에 따라 생성 및 적립, 거래 및 인증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2] 크레딧 생성, 적립, 거래 및 인증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제목	첨단 청정 트럭의 크레딧 생성, 적립 및 거래	첨단 청정 트럭의 크레딧 생성, 적립, 거래 및 인증
(b) NZEV 크레딧 계산 (2) 최소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	크레딧을 획득하려면 NZEV는 2029년 모델 연도까지 17 CCR 제95663(d)조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를 갖추어야 하며, 2030년 모델 연도부터는 75마일과 같거나 초과, 또는 그 이상의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를 갖추어야 함	크레딧을 획득하려면 NZEV는 2029년 모델 연도까지 17 CCR 제95663(d)조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를 갖추어야 하며, 2030년 모델 연도부터는 45마일과 같거나 초과, 또는 그 이상의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를 갖추어야 함
(d) 크레딧 적립	ZEV 및 NZEV 크레딧은 미래 사용을 위해 적립될 수 있음  적립된 크레딧은 1963.3조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1963.2(g)조에 따라 제한된 유효 기간을 가짐	부족분 상쇄를 위해 소멸되지 않은 ZEV 및 NZEV 크레딧은 미래 사용을 위해 적립될 수 있음  적립된 크레딧은 1963.3조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1963.2(g)조에 따라 제한된 유효 기간을 가짐
(e) 크레딧 거래 및 양도	ZEV 및 NZEV 크레딧은 제조업체 간에 거래, 판매, 구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될 수 있음	잉여 ZEV 및 NZEV 크레딧만이 특정 주 내에서 제조업체 간에 거래, 판매, 구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될 수 있음  제조업체는 1963.7조의 요건에 따라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다른 ACT 풀링 주에 있는 본인 계정으로 양도할 수 있음  (1) <b>크레딧 양도 제한</b> : 각 모델 연도에 제조업체 계정에서 양도되는 ZEV 또는 NZEV 크레딧 수는 해당 계정의 잉여 크레딧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양도되는 트랙터 크레딧 수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이어야 함  (A) 계정의 잉여 크레딧 및 (B) 잉여 7-8 등급 트랙터 크레딧 수

<p>이 방식으로 이전된 ZEV 또는 NZEV 크레딧은 1963.3조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1963.2(g)조에 따른 제한된 유효 기간을 가지며, 1963.4조의 요건에 따라 행정관에게 신고해야 함</p> <p>2차 차량 제조업체는 제조업체와 ZEV 및 NZEV 크레딧을 거래, 판매, 구매 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된 ZEV 및 NZEV 크레딧은 1963조4(c)항의 요건에 따라 행정관에게 신고해야 함</p>	<p>(2) 양도 크레딧 요건 양도 대상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은 제1963조3항에 따라 손실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1963조2(g)항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제한되며, 제1963조4항의 요건에 따라 행정관에게 신고해야 함</p> <p>(3) 2차 차량 제조업체 크레딧 양도 보조 차량 제조업체는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특정 주 내 제조업체에 거래, 판매, 구매 또는 양도할 수 있음</p> <p>(4) 크레딧 양도 효력 발생일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은 크레딧이 생성된 모델 연도 종료 후 180일이 지나야 계정에서 양도할 수 있음</p>
--	---

### □ 1963.3. 첨단 청정 트럭 규정 준수 결정 주요 내용

- 첨단 청정 트럭 크레딧 규정 준수 결정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표 3] 규정 준수 결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a) 규정 준수 결정	<p>연간 규정 준수 결정</p> <p>각 모델 연도에 제조업체의 소멸된 7-8등급 트랙터 크레딧이 1963.3(c)(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7-8등급 트랙터 부족분을 상쇄할 때, 그리고 제조업체의 소멸된 총 크레딧이 총 부족분을 상쇄할 때 규정 준수가 달성됨</p>	<p>규정 준수 결정</p> <p>각 모델 연도 말에 제조업체의 소멸된 7-8등급 트랙터 크레딧이 발생한 7-8등급 트랙터 부족분을 상쇄할 때, 그리고 모든 차량 그룹에 대해 제조업체의 소멸된 총 크레딧이 모든 차량 그룹에 대해 발생한 총 부족분을 상쇄할 때 규정 준수가 달성됨</p> <p>규정 준수 계산은 이전 모델 연도의 잔여 계정 잔액으로 시작하여 모델 연도 동안 제조업체 계정의 크레딧 및 손실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63.2항에 따라 발생한 크레딧의 합계를 더함</li> <li>(2) 1963.2(e)항에 따라 계정으로 양도된 크레딧의 합계를 더함</li> <li>(3) 1963.1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합계를 뺌</li> <li>(4) 1963.2(e)항에 따라 계정에서 양도된 크레딧의 합계를 뺌</li> </ol> <p>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차량 그룹의 계정 잔액은 함께 계산하고 7-8급 트랙터 그룹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산하며, 제조업체는 규정 준수 계산 완료 후 계정 잔액이 양수이면 잉여 크레딧을, 음수이면 순 부족분을 기록함</p>
(b) 부족분 보전의 유연성	<p>특정 모델 연도 종료 후 누적된 부족분이 발생한 제조업체는 이 유연성을 활용하여 연속된 3개 모델 연도 기간 동안 부족분을 보전 할 수 있음</p> <p>3개 모델 연도 기간은 제조업체가 순 손실을 기록한 모델 연도의 다음 첫 번째 모델 연도부터 시작됨</p>	<p>특정 모델 연도 종료 후 9월 30일 이후 순 부족분이 발생한 제조업체는 이 유연성을 활용하여 연속된 3개 모델 연도 기간 동안 남은 부족분을 상쇄 할 수 있음</p> <p>3개 모델 연도 기간은 제조업체가 순 손실을 기록한 모델 연도의 다음 첫 번째 모델 연도부터 시작됨</p>

	<p>1963조3(d)항에 따라, 모델 연도에 발생한 부족분의 최대 50%는 NZEV 크레딧으로 보전 할 수 있음</p> <p><b>모든 모델 연도의 총 순 부족분 잔액은 3개 모델 연도 보전 기간 종료 시까지 상쇄되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존재하는 모든 부족분이 상쇄될 때까지 새로운 보전 기간을 시작할 수 없고 만약 순 부족분 잔액이 가장 최근 모델 연도로부터 발생한 부족분의 30퍼센트보다 큰 경우 순 부족분은 보전 기간의 첫해와 두 번째 해가 끝날 때까지 30% 미만으로 줄여야 함</b></p> <p>예를 들어, 2024년 모델 연도에 1,000건의 부족분을 누적한 제조업체는 2025년 모델 연도 말까지 순 부족분 잔액이 300건의 부족분(1,000건 부족분의 30% 미만) 미만이어야 하며, <b>2025 모델 연도 말까지 제조업체의 2025 모델 연도 순 부족분(2024년 부족분 잔액과 합산된 금액)의 30% 미만을 유지해야 함</b></p> <p>2027년 모델 연도 말까지 이 예시에서 언급된 모든 모델 연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총 순 부족분 잔액은 상쇄되어야 함</p> <p>부족분을 보전하는 제조업체는 부족분이 준수 연도 말 내에 보전될 때까지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양도할 수 없음</p>	<p>1963조3(d)항에 따라, 모델 연도에 발생한 부족분의 최대 50%는 NZEV 크레딧으로 상쇄 할 수 있음</p> <p>제조업체는 규정 준수를 달성할 때까지 새로운 보전 기간을 시작할 수 없고 규정 준수는 3개 모델 연도의 손실 보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완료되어야 함</p> <p>보전 기간의 첫해와 두 번째 해가 끝날 때까지 <b>순 부족분은 이전 모델 연도에 발생한 손실의 30% 미만으로 줄여야 함</b></p> <p>예를 들어, 2024년 모델 연도에 1,000건의 부족분을 누적한 제조업체는 2025년 모델 연도 말까지 순 부족분 잔액이 300건의 부족분(1,000건 부족분의 30% 미만) 미만이어야 함</p> <p>제조업체가 2025년 모델 연도에 1,500건의 부족분을 누적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2026년 모델 연도 말까지 순 부족분 잔액이 450건의 부족분(1,500건 부족분의 30% 미만) 미만이어야 함</p> <p>2027년 모델 연도 말까지 제조업체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p> <p>모델 연도 말 기준 계정 잔액이 순 부족분인 제조업체가 계정의 총 순 부족분을 늘리거나 7-8 등급 트랙터 그룹의 순 부족분을 늘리는 경우,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계정에서 양도할 수 없으며, 2035년 모델 연도 말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p>
(c) 크레딧의 소멸 순서	<p>크레딧 계정은 1963.3(c)(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관례를 사용하여 차변에 기입됨</p> <p><b>(3) 낮은 트랙터 용량 유연성</b></p> <p>모델 연도 동안 7-8등급 트랙터 부족분이 25개 이하이고 1963.3(c)(1) 및 1963.3(c)(2)항의 크레딧 소멸 순서에 따라 크레딧을 소멸한 후에도 트랙터 부족분이 남아 있는 제조업체는 가장 먼저 만료되는 크레딧부터 시작하여 최대 25개의 2b-3등급 또는 4-8등급 그룹 ZEV 크레딧을 사용하여 7-8등급 트랙터 그룹 부족분을 충족시킬 수 있음</p>	<p>크레딧 계정은 제조업체가 모델 연도 말 이후 최초 판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대체 순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본 조에 명시된 다음 관례 및 순서를 사용하여 차변에 기입됨</p> <p><b>(3) 7-8등급 트랙터 그룹 순 부족분 보전의 유연성</b></p> <p>각 모델 연도 말에 제조업체는 잉여 2b-3 등급 또는 4-8등급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전환하여 7-8등급 트랙터 그룹 잉여의 잔여 순 부족분 잔액을 상쇄할 수 있음</p> <p>2b-3등급 및 4-8등급 ZEV 크레딧은 원래 가치의 80%로 7-8등급 트랙터 그룹 ZEV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음</p> <p>잉여 2b-3등급 및 4-8등급 NZEV 크레딧은 원래 가치의 80%로 7-8등급 트랙터 그룹 NZEV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음</p> <p>제조업체는 모델 연도당 총 1,000크레딧을 초과하여 전환할 수 없음</p> <p>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된 ZEV 및 NZEV 크레딧은 1963조4(e)항의 요건에 따라 행정관에게 신고해야 함</p>

(f) 준수 여부 결정	<p>각 모델 연도 말까지 누적 크레딧이 이전 모델 연도에 폐기된 총 순 부족분을 초과하면 준수가 이루어짐</p> <p>제조업체의 특정 모델 연도 준수 여부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용으로 인도된 차량의 신고된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정함</p>	<폐지>
--------------------	--	------

#### □ 1963.4. 첨단 청정 트럭에 관한 신고 및 기록 보관 주요 내용

- 첨단 청정 트럭에 관한 신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표 4] 신고 및 기록 보관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a) 매출 신고	<p>2021년 모델 연도부터, 각 모델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조업체는 1963.4(d)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용으로 생산 및 인도된 모든 차량에 대해 CARB(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 다음 정보를 신고해야 함</p>	<p>각 모델 연도 종료 후 4월 1일까지, 2021년 모델 연도부터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용으로 생산 및 인도된 모든 차량에 대해 CARB(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 다음 정보를 신고해야 함</p>
(b) 신고 업데이트	<p>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의 판매 여부에 대해 이전에 신고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이전 3년 모델 연도의 차량 신고서를 업데이트 해야 함</p> <p>기타 모든 신고 정보는 1963.4(a)항에 제시된 초기 90일간의 신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18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음</p>	<p>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의 판매 여부에 대해 이전에 신고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이전 3년 모델 연도의 차량 신고서를 업데이트 해야 함</p> <p>기타 모든 신고 정보는 각 모델 연도 종료된 다음 9월 30일까지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음</p> <p>차량이 ZEV 또는 NZEV로 전환되어 다른 제조업체에서 신차로 판매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신고서에서 차량을 삭제해야 함</p>
(c) 캘리포니아 주 내 크레딧 양도 신고	<p>크레딧 양도 신고</p> <p>ZEV 또는 NZEV 크레딧을 다른 제조업체 또는 보조 차량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다른 제조업체 또는 2차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받는 제조업체 또는 2차 차량 제조업체는 모든 크레딧 양도 및 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함</p> <p>CARB는 신고서 접수일까지 어떤 크레딧 양도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함</p> <p>(1) 양도 신고 마감일 신고서는 크레딧 거래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p>	<p>캘리포니아 주 내 크레딧 양도 신고</p> <p>ZEV 또는 NZEV 크레딧을 다른 제조업체 또는 보조 차량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다른 제조업체 또는 2차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받는 제조업체 또는 2차 차량 제조업체는 모든 크레딧 양도 및 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함</p> <p>1963조4(o)(2)항에 명시된 필수 크레딧 양도 정보와 함께 제출된 크레딧 양도는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것으로 기록됨</p> <p>(1) 양도 신고 마감일 신고서는 각 모델 연도 종료 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p> <p>크레딧 양도는 거래가 발생하고 신고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모델 연도에 반영됨</p> <p>예를 들어, 2025 회계연도에 발생하고 신고되는 크레딧 거래는 2025 모델 연도 준수에 반영됨</p>

<p>(d) 주 간 크레딧 양도 신고</p>	<p>&lt;신설&gt;</p>	<p>캘리포니아 계정과 ACT 풀링 주의 다른 계정 간에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양도하기로 선택한 제조업체는 제안된 모든 크레딧 양도에 대한 신고서를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함</p> <p>행정관은 캘리포니아 계정과 ACT 풀링 주의 다른 계정 간에 크레딧을 양도하기 위한 기준이 1963.7항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후 크레딧 양도 및 신고서 접수일을 기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도 신고 마감일. 신고서는 각 모델 연도 종료 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li> <li>(2) 필수 크레딧 양도 신고서 정보 캘리포니아와 다른 ACT 풀링 주 간에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양도하는 제조업체는 당사자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한 양도 내용이 명시된 서신 또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크레딧 양도인의 법인명</li> <li>(B) ZEV 및 NZEV 크레딧이 인출된 주</li> <li>(C) ZEV 및 NZEV 크레딧이 양도되는 주</li> <li>(D) 각 모델 연도별로 양도된 ZEV 크레딧 수(1963조2(c)항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li> <li>(E) 각 모델 연도별로 양도된 NZEV 크레딧 수(1963조2(c)항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li> <li>(F) ZEV 또는 NZEV 크레딧이 2b-3등급 그룹, 4-8등급 그룹 또는 7-8등급 트랙터 그룹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시</li> </ul> </li> </ul>
<p>(e) 7-8등급 트랙터 그룹 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크레딧 전환</p>	<p>&lt;신설&gt;</p>	<p>7-8등급 트랙터 그룹의 순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2b-3등급 또는 4-8등급 차량 그룹의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전환하기로 선택한 제조업체는 제안된 모든 크레딧 전환에 대한 신고서를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함</p> <p>행정관은 크레딧 전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딧 전환 및 신고서 접수일을 기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환 신고 마감일. 신고서는 각 모델 연도 종료 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li> <li>(2) 필수 크레딧 전환 신고 정보. 2b-3등급 또는 4-8등급 차량 그룹의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전환하여 7-8등급 트랙터 그룹의 순 부족분을 상쇄하는 제조업체는 당사자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한 전환 계약 또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제조업체 명</li> <li>(B) 1963조2(c)항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반올림한 2b-3등급 ZEV 및 NZEV 크레딧 전환 수</li> <li>(C) 1963.2조(c)항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반올림한 4-8등급 ZEV 및 NZEV 크레딧 전환 수</li> </ul> </li> </ul>

□ 1963.7. 타 주로 크레딧을 양도하기 위한 풀링 유연성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외에 타 주로 크레딧 양도에 관한 풀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표 5] 타 주로 크레딧을 양도하기 위한 풀링 유연성 세부 내용

구분	신규 조항														
(a) 통합 ZEV 및 NZEV 크레딧	<p>제조업체는 2027년 모델 연도 종료 후 매년 ACT 풀링 주에서 ZEV 및 NZEV 판매로 발생한 잉여 크레딧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모델 연도에 다른 ACT 통합 주에서 발생한 잔여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양도할 수 있음</p> <p>(1) 제조업체는 순결손 계정 잔액이 없는 다른 ACT 풀링 주에서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제조업체 계정으로 양도할 수 없음 제조업체는 해당 모델 연도 종료 후 ACT 풀링 주에서 남은 순 부족분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양도할 수 없음</p> <p>(2) 해당 모델 연도 내에 다른 ACT 풀링 주에서 제조업체 계정으로 양도할 수 있는 모든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의 최대 수는 해당 모델 연도에 대한 표 A-3의 통합된 차량 크레딧 허용 한도에 제1963.1조(b)항에 기재된 연간 결손액을 곱하여 계산함 제조업체는 해당 모델 연도의 차량 크레딧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양도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A-3. 모델 연도별 차량 크레딧 공제 한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모델 연도</th><th>2027</th><th>2028</th><th>2029</th><th>2030</th><th>2032</th><th>2032-2035</th></tr> <tr> <td>공제율</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d>10%</td></tr> </table> <p>(3) 제조업체는 잉여 ZEV 또는 NZEV 크레딧을 1963.3조(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족분 보전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다른 ACT 풀링 주에 있는 제조업체 계정으로 양도할 수 있음</p>	모델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2	2032-2035	공제율	20%	18%	16%	14%	12%	10%
모델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2	2032-2035									
공제율	20%	18%	16%	14%	12%	10%									

□ 1956.8. 배기 가스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

- 1985년형 및 이후 모델의 중형 차량용 엔진 및 차량 및 2021년형 및 이후 모델의 무공해 파워트레인

- 첨단 청정 트럭 규정에 참조되는 배기 가스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 문서의 발효 일자를 수정함

[표 6] 배기 가스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재	개정안
(a)(8) 무공해 파워트레인 인증 기준	2021년형 및 이후 모델 연도(MY)의 중형 차량(총 차량 중량 등급 14,000파운드 초과) 및 중형 차량(총 차량 중량 등급 8,501~14,000파운드)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은 “캘리포니아 2021년 및 이후 모델 연식 중형 및 대형 무배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준 및 시험 절차” 2025년 3월 19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문서로,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되며, 이 절차에 따라 인증된 파워트레인은 모든 기준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로 간주됨	2021년형 및 이후 모델 연도(MY)의 중형 차량(총 차량 중량 등급 14,000파운드 초과) 및 중형 차량(총 차량 중량 등급 8,501~14,000파운드)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은 “캘리포니아 2021년 및 이후 모델 연식 중형 및 대형 무배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준 및 시험 절차” <발효 일자> 마지막으로 개정된 문서로,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되며, 이 절차에 따라 인증된 파워트레인은 모든 기준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로 간주됨

### 3

### 관련 법령 및 표준

#### □ 관련 법령 및 표준

##### ○ 법령

-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 자동차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 Motor Vehicles)
- 연방 청정대기법 (미국 연방 법전 제42편 § 7507) (Clean Air Act (42 U.S.C. § 7401))
- 연방 규정집 제40편 - 환경 보호 (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Protection of Environment) - 40 CFR
-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전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HSC))